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50
----------	------

발의연월일 : 2016. 11. 21.
발의자 : 윤재옥 · 박성중 · 유민봉
홍철호 · 황영철 · 유재중
이명수 · 박순자 · 이완영
김순례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400여 차례 이상 계속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자연재해 중에서도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지진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등 평소의 대비가 중요함.

이와 같은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추진 결과 내진율이 3.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내진보강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근 증대되고 있는 시설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
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의3).
-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
들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 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
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6조의4제1항 신설).
- 라.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만 내
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개정안은 재난관리주
관기관이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도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
치하여야 함.(안 제17조제1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의 제목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20인”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지진·화산방재정책에 대한 재난관리책임 기관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전문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 중 “방법”을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평가의 절차·방법”으로 한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국민안전처장 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들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건축주·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국민 안전처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의 기간 중 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기관의 장”으로, “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시설(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및 통신 등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은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중 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
제29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
5.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지 아니 한 시설물에 대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 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④ 그 밖에 <u>심의회</u>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생략)</p> <p><신설></p>	<p>⑤ ----- <u>위원회 및 자문위원 회</u>-----.</p> <p>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평가의 절차·방법-----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들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p> <p>②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p>
--	--

한다.

③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건축주·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
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
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
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6조의
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
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
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의 기간 중 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제17조(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거나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기능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대책) ① 다음 각 호의 시설(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및 통신 등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은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중 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의 설

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치 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설-----

-----.
-----.

제29조(과태료)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

5.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 정지의 기간 중 인증기관의

<p>② ~ ⑤ (생략)</p>	<p><u>업무를 수행한 자</u> ② ~ ⑤ (현행과 같음)</p>
-------------------	--